

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서울 전역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4,000천원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4,0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254,000천원		254,000천원	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254,000천원		254,000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○ 문화재 지정 대상에 대한 사전 종합 사료조사,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지적측량을 통한 지정도면 작성,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시 일간지 2개소 공고문 광고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역사문화재과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사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문화본부	역사문화재과	정상훈 2610	허대영 2629	정빛샘 2630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135,000	(x-) 115,000	(x-) 254,000	(x-) 139,000	(x-) 120
사무관리비	(x-) 135,000	(x-) 35,000	(x-) 254,000	(x-) 219,000	(x-) 625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무관리비	○ 지적측량 수수료 및 신문광고료 254,000 = 254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신규 지정 또는 정비대상 문화재의 지정범위를 사료조사 및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설정하고, 일간지 공고를 통해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범위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혜택사항을 널리 알림

□ 사업근거

- 문화재보호법 제10조(문화재 기초조사)
- 문화재보호법 제70조(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 등), 같은 법 74조(준용규정)
-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11조(지정의 고시 및 통지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(지정·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)
-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
: 부동산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계획을 일간지 2개소 이상 공고 및 지적측량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화재 지정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전역
- 규 모 : 서울시 유형문화재 70여 곳 및 신규지정, 정비 대상 부동산 문화재

- 사업기간 : '17.1~'17.12
- 사업내용 : 문화재 지정 대상에 대한 사전 종합 사료조사,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지적측량을 통해 지정도면 작성,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시 일간지 2개소 신문 광고문 게재
- 총사업비 :254,000

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2018년 서울 소재 부동산문화재 정기 조사 및 측량 결과 공고 년한이 도래함에 따라 '17.'18년 연차적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 소재 부동산 문화재 일부에 해당하는 70여건의 측량과 공고를 진행하고자 함

사업추진절차

- 사전 사료조사 ⇒ 문화재위원 현장 조사 ⇒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⇒ 지적측량(대한지적공사의뢰) ⇒ 문화재 지정계획 예고(신문광고 필수, 일간지 2개소 광고의뢰) ⇒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⇒ 지정고시(부동산 : 지형도면 고시)

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54,000	
문화재 측량	2017.01~2017.12	254,000	지적 측량 및 일간지 게재 의뢰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경천군 이해룡 사패지 송금비> 등 문화재 6건 지정 ○ <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> 등 문화재 지정계획 신문광고 3건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태평로2가 지하배수로> 등 문화재 4건 지정 ○ <백사이항복집터> 지정내용변경 계획 등 신문광고 3건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> 지정을 위한 지적 측량 및 문화재 5건 지정 신문 광고

향후 기대효과

-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규제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적측량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, 지정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정계획을 널리 알려 문화재 지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-) 30,000	(x-) 0	(x-) 16,962	(x-) 46,962	(x-) 46,743	(x-) 0	(x-) 219
2014	(x-) 32,000	(x-) 0	(x-) 0	(x-) 32,000	(x-) 29,917	(x-) 0	(x-) 2,083
2015	(x-) 135,000	(x-) 0	(x-) 0	(x-) 135,000	(x-) 134,914	(x-) 0	(x-) 86